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확대 등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5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제221065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피해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확대 등(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3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51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2.
3. 회 부 일 : 2025. 6.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피해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확대 등(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피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내용에 양육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생략)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 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
<신설>	1. 중증후유장애인: 「의료법」에 따

현행	개정안
<신설>	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 생활자금의 대출, 양육비·자립지원금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신설>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서적·경제적 지원
<신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양육비·보조금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5항에-----구체적인 대상·기준·금액·방법·절차 및 고지-----.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생략)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	② -----제30조제5항에-----

현행	개정안
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략) 4. <u>제30조제4항에</u>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 ~ 14. (생략)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30조제4항에</u>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0조제5항에</u>----- ----- 5. ~ 14. (현행과 같음)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0조제5항에</u> -----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30조제2항1)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 중 보험의 보상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한하여 재활 및 생활지원을 위해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 또는 유자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고²⁾, 피해자지원사업 중 경제적지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9.21> <개정 2011.12.8><개정 2013.12.31><개정 2020.2.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

사업으로는 재활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 등이 있으며, 정서적 지원 사업으로는 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 주거환경 개선, 방문케어 서비스 등 맞춤형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 경제적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액 >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및 심사
중증 후유장애인(1-4급)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1년 단위
		장학금	분기 35만원	1년 단위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1년 단위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만 18세 까지
		장학금	분기 35만원	만 18세 까지 *1년 단위로 생활형편 서류 심사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5만원	만 18세 까지 *2년 단위로 생활형편 서류 심사

< 정서적 지원 사업 목록 >

구분	지원사업
정서적지원	유자녀멘토링
	방문케어 서비스
	심리안정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자녀미래산업체험
	출산·상조용품 지원

* 유자녀 :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0세 이하)

* 피부양가족 : 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당사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상환 : 유자녀가 만30세가 되는 달부터 15~20년 분할(월/분기/반기/년) 상환

* 지원금액은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감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최근 3년간 피해지원사업의 지원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지원인원은 6,297명으로 2022년 7,095명에 비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삭제 <2013.12.31>

② 삭제 <2020.2.13>

③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원신청서의 접수일자 순서에 의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제적 정서적 지원사업 지원인원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대상 자	구분	2022		2023		2024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경제적 지원	후유 장애인	재활보조금	4,933	12,481	4,821	12,307	4,749	12,031
		장학금	2	3	2	4	2	4
	유자녀	장학금	784	989	679	978	572	837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352	779	295	694	236	573
		자립지원금	1,024	615	865	531	738	463
	피부양 가족	피부양보조 금	852(가구)	2,122	795(가구)	1,977	745(가구)	1,852
	소계		7,095 852(가구)	16,989	6,662 795(가구)	16,491	6,297 745(가구)	15,760
정서적 지원	심리안정지원		200	202	200	201	205	201
	방문케어서비스		640(가구)	504	675(가구)	482	756(가구)	516
	유자녀 멘토링	멘토링	60	74	60	76	55	69
		체험	28	60	22	55	21	59
	주거환경개선		37(가구)	48	32(가구)	48	41(가구)	48
	상조/출산용품		37(가구)	6	17(가구)	3	13(가구)	2
	소계		288 714(가구)	894	282 724(가구)	865	281 810(가구)	895
합 계			7,383 1,566(가구)	17,883	6,944 1,519(가구)		6,578 1,555(가구)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피해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현재 하위 법령에 규정된 지원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며,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수준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주요 개정 사항 >

- (지원 대상 범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이하로 확대
* (현행) 자배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원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양육비를 추가
- (지원 수준)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수준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규정
- (위임 사항) 위임입법(대통령령) 사항으로 지원 고지 방법 추가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여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에 지원대상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지원대상자 및 지원항목 확대 관련

먼저,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을 중위소득³⁾ 이하인 자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원 수요는 약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약 1,0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됨.⁴⁾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른 편익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지원항목으로 양육비를 추가하고 있고, 양육비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유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 수준은 생계급여 수준에 준하도록 지원하여 자동차사고피해자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2호)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4) 이는 단순 소득계층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5.63%) 대비 중위소득 이하 가구(33.14%)의 비율이 6배 이상인 점에 기초하였음.(2021년 보건복지부, 국민생활실태조사)

이에 2024년 경제적 지원금액의 157.6억원의 6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아 추가 재정소요를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음.(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녀 양육비 등을 위해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중이며,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양육 지원사업이 있는 만큼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아울러, 개정안은 종전 국토교통부예규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피해지원사업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지원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어 법률로 피해지원사업의 유형을 규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내용 강화에 따른 자동차사고피해자의 생계 유지 및 편익 증대, 보험의 보상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부칙(개정안 적용대상 관련)

부칙 제2조에서는 제3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될 자(신청 및 심사 완료)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이전 신청한 자에게 대해 적용하는 것은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재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과거 입법례를 보면,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변경시에는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3.12.31.) 적용례 >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는 예규 개정 시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경과조치를 적용함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해당 사업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책임보험의 0.5%)을 통해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따른 편익과 국민 부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자배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사고시 배상은 보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의 보상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피해자에 한하여 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또한 현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지원 내용을 법률로 규정시 대상자의 수요 변화를 적기 반영하기 어려운 점에서 현행 체계 유지가 필요함.

아울러, 자녀 양육비 등을 위해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중이며, 이미 다양한 양육 지원이 있는 만큼 중복 여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부칙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사업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장래(익월)에 대하여만 지원금을 지급 중이며, 과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또는 지원금액 변경 시에도 경과조치를 적용함.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지원중인 자(신청 및 심사 완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 총액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 및 국민 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

2) 법무부

지원항목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분야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의 자녀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함.

3) 기획재정부

지원항목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분야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

경제적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 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일률적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포함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원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법정 부담금⁵⁾ 상향 등 국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함.

5)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24.7~'27.6은 한시적으로 부담금률 0.5%로 완화)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1 중위소득 기준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	'24년	222만	368만	471만	572만	699만	761만
		8,445	2,609	4,657	9,913	5,735	8,369
	'25년	239만	393만	502만	609만	710만	806만
		2,013	2,658	5,353	7,773	8,192	4,805

□ 소득계층별 인구비율(보건복지부, 국민생활실태조사 2021년)

(항목 : 인구비율, 단위 : %)

구분	합계	수급	30% 미만	30 - 40%	40 - 50%	50 - 60%	60 - 75%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75 - 100 %	100 % 이상
현행	5.63	3.21	0.59	0.69	1.14	1	1.55	10.52	14.44	66.85
개선	33.14	3.21	0.59	0.69	1.14	1	1.55	10.52	14.44	66.85

* 수급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제외)

참고 2

피해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근거

- (목적)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돕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1~4급),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자배법 시행령 제21조)

□ 사업내용

- (경제적 지원) 재활보조금·생활자금 대출 등 대상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및 심사
중증 후유장애인(1-4급)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1년 단위
		장학금	분기 35만원	1년 단위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1년 단위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만 18세 까지
		장학금	분기 35만원	만 18세 까지 *1년 단위로 생활형편 서류 심사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5만원	만 18세 까지 *2년 단위로 생활형편 서류 심사

* 유자녀 :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0세 이하)

* 피부양가족 : 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당사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상환 : 유자녀가 만30세가 되는 달부터 15~20년 분할(월/분기/반기/년) 상환

* 지원금액은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감

- (정서적 지원) 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 주거환경 개선, 방문케어 서비스 등 맞춤형지원서비스 제공